

4 위반행위 신고·처리 및 신고자 보호·보상

위반행위 신고 접수 · 처리절차



-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·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
- 조사기관은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·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,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

신고자에 대한 보호 · 보상

-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, 원상회복조치, 신분 비밀보호, 신변보호,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
- 아울러,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**보상금·포상금**을 지급